

2010년도 매체교환율 공표

방송법 제69조의2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5항에 의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2010년도 매체교환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1. 근거규정

-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
-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(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)
-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(매체교환율)

2. 매체교환율

가. 매체교환율 : 0.49

$$\therefore 0.49(\text{매체교환율}) = [0.46(\text{이용자 조사}) + 0.52(\text{시장 조사})] \div 2$$

나. 세부내용

□ 이용자 측면의 매체 영향력 : 전화 설문조사

- 조사표본 : 16개 시도 19세이상 남녀 2,250명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$\pm 2.1\%$
- 조사일시 : 2010. 7. 23(화) ~ 8. 15.(일), 주말 4회 포함

< 전화 설문조사 결과 >

구분 (측정요소)	응답결과		TV 기준, 신문의 비율	
	TV	신문	TV(1)	신문
시사정보 이용률	84.8%	49.5%	1	0.58
시사정보 이용시간	51.35분	18.98분	1	0.37
매체의존도	60.55%	25.55%	1	0.42
평균	-	-	1	0.46

□ 시장 측면의 매체 영향력 : 광고매출 조사

- 텔레비전 방송 광고 :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공표 통계 이용
- 일간신문 광고 : 제일기획 광고연감 통계 이용

< 2009년 텔레비전·신문 광고 현황 >

방통위 재산상황공표		제일기획 광고연감	
텔레비전	금액(억원)	일간신문	금액(억원)
최종 광고매출	25,906	최종광고매출	13,495
1		0.52	

3.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최종 환산

□ 시청률의 합 : 34.927

○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의 2009년 연평균 시청률을 평균합

※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곱하여 구한 값을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최종 시청점유율로 환산

4. 기타사항

□ 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 부칙 제2조(시청점유율 산정의 특례) 제1항에 따라 동 매체교환율(0.49)은 2011년도에도 적용

2010. 10. 25

방송통신위원회